

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·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5 일
신청인	① 상호(명칭)			
	② 성명(대표자)		③ 생년월일	
	④ 주소	(전화:)		
⑤ 터미널의 명칭				
⑥ 위치				
⑦ 착수 예정연월일				
⑧ 준공 예정연월일				
⑨ 변경에 따른 설비의 사용 개시 예정시기				
⑩ 1일 예정발차횟수 및 대수				
⑪ 변경내용				
⑫ 이유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·규모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시·도지사 귀하				
※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			수수료
				15,000원

(뒤 쪽)

※ 첨부서류

1.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
2.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·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
3.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 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·횡단보도·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
4.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·구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
5.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